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목적

이 통합작성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이하 “양 계획서”라 한다)를 수립함에 있어 양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킴은 물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고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양 계획서의 제출대상에 동시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이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공사에 모두 해당되어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기준에서 정해놓은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당 규정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3. 관계법령 및 기준

이 작성지침서에 의거 양 계획서에 대한 통합계획

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관련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제121조 (제출서류 등)

-제122조 (계획서의 검토 등)

-제123조 (심사결과의 구분)

-제123조의2 (계획서의 비치 등)

-제124조 (확인)

-제124조의2 (보고 등)

※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제출항목	제출서류 및 내용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 (별지 제45호 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매설물 현황 포함) 다. 건설물·공사용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공정표

제출항목	제출서류 및 내용
2 안전보건 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별지 제46호 서식) ※ 각항목별 세부사용계획내역 작성 나. 안전관리조직표 · 안전보건교육 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 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추락방지 계획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 시설물 설치계획
4 낙하·비레 예방계획	낙하·비레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계획
5 붕괴방지 계획	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또는 가시설물 계획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 작업계획	가. 안전규칙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검사계획 나. 안전규칙 별표 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7 감전재해 예방계획	고압선 및 전기 기계·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계획
8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 계획	영 별표 7에 의한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계획 (목공용 동근톱 · 교류아크 용접기 · HandGrinder 등)
9 보건·위생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계획	가. 분진 및 소음발생작업 공중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 화장실 ·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터널작업 등 특수작업시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 설비계획 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10.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 계획	가. 위험물질의 종류 · 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 나. 위험물질의 저장 · 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다. 발파작업시 안전계획

※ 비고 : 계획서의 항목 중 각 현장별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출한다.

<표 2> 안전관리계획서 관계 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 3(안전관리계획의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안전관리계획)

※ 첨부서류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첨부서류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 공사개요 · 전체공정표 및 설계 도서(공사인 · 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 제외)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 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 확인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 · 정기 안전점검 시기 · 내용 · 안전점검공정표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 관련 실무

-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금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 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흙막이·발파·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4. 통합계획서의 작성·제출

가. 통합계획서의 작성

(1) 통합계획서는 기본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와 안전관리 공동계획으로 구성한다

(가) 기본사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계획,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은 기본사항 이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만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유해·위험요인별 재해방지계획으로 구분된다.

(다) 안전관리계획은 기본사항 이외에 안전관리계획서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라)유해·위험방지와 안전관리 공통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계획 및 서류, 도면을 작성하도록하여 중복을 방지한다.

② 통합계획서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통합계획서의 작성 규격은 A4 용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표 및 도면 등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A4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한다.

④ 통합계획서의 내용 중 구조계산서 및 안전성 검토서 등을 당해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서에 작성일과 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한다.

⑤ 통합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지침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관련 있는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⑥ 「Ⅲ. 안전관리계획 중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통합계획서와 분리하여 공종별로 별도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공전 제출이 가능하다. 단 「Ⅵ. 공통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검토되어야 하므로 통합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통합계획서의 구성

I. 기본사항

1. 공사개요
2. 안전관리조직
3. 안전교육계획
4.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II. 유해·위험방지계획

1. 안전보건관리계획

-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나.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2. 유해·위험요인별 재해방지계획

- 가. 추락방지계획
- 나. 낙하·비래 예방계획
- 다. 붕괴 방지계획
- 라.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 마. 감전재해 예방계획
- 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
- 사. 보건·위생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계획
- 아.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III. 안전관리계획

1.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 가.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다.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 라.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2.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가. 가설공사
-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다. 콘크리트공사
- 라. 강구조물공사
- 마. 성토 및 절토공사
- 바. 해체공사
- 사. 건축설비공사

IV. 유해·위험방지와 안전관리 공통계획

1.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
2. 가설기계 안전관리계획
3.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안전관리계획
4. 발파공사 안전관리계획

건설 관련 실무

다. 통합계획서의 제출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합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이하 "안전공단" 이라한다)에 2부를 제출한다.

※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나)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자체 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일까지 자체 심사서를 안전공단에 제출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가) 시공자는 통합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단,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가·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나) 공중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확인신청) 기간은 당해 공중의 착공 전일까지로 한다.

라. 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가) 안전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 심사결과 구분

- ①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③ 부적정 :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확인검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는 3월에 1회(높이 3m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설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확인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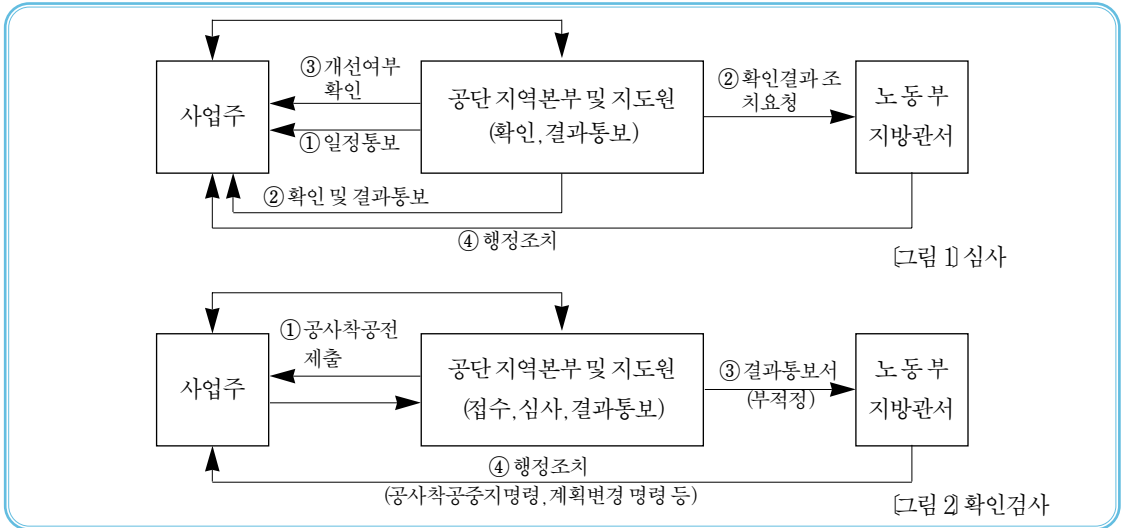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2) 안전관리계획서

(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중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하 '확인자' 라 함)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단,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확인자' 라 함)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나) 확인결과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그림 1] 심사

[그림 2] 확인검사

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확인결과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라) 확인결과의 통지 기한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② 공중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한다.

(마) 확인결과의 통지 내용

① 확인결과가 “적정”일 경우

확인필이 날인된 안전관리계획서

② 확인결과가 “조건부적정”일 경우

확인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내용 첨부

③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부적정 판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내용 첨부

(바)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신청

① 확인결과가 “조건부적정”일 경우

확인결과 통지서의 내용에 따른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②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사) 재확인 신청 기한

확인결과가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확인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공중별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한다.

(아)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및 재확인결과 통지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절차, 재확인 기준, 재확인결과 통지 등은 최초의 확인과 동일하며, 다만 재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공중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 